

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,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[예] [첨부서류] 위임장 1통 [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]

[서류명] 심판청구서

[심판번호] 2007-당-123456

마.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(스캐닝)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

- (1)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(300dpi 권장)의 흑백 TIFF(Tagged Image File Format)로 합니다.
- (2)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,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(300dpi 권장)의 JPEG(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)로 합니다.

바. 첨부서류를 PDF(Portable Document Format)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사. 명세서·요약서 및 도면을 제출할 시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5호서식(명세서), 별지 제16호서식(요약서) 및 별지 제17호서식(도면)을 준용하고, 그 서식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적습니다.

13. 작성 시 유의사항

서식은 출원인(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)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, 2명 이상의 출원인(대리인)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.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(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,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)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, 출원인코드 정보변경(경정)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실용신안등록출원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출원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원인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여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지식경제부 제공>

국무총리훈령

●국무총리훈령 제574호

지식재산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11년 9월 28일

국무총리 인

지식재산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

지식재산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.

부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폐지이유 및 주요내용

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·조정하고, 그 추진상황을 점검·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「지식재산 기본법」이 제정(법률 제 10629호, 2011. 5. 19. 공포, 7. 20. 시행)됨에 따라 그 기능이 중복되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.

고 시

●농림수산물부고시제2011-160호

「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방조제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의 개발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년 9월 28일

농림수산물부장관

새만금방조제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개발기본계획 승인

1. 사업의 명칭 : 새만금방조제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
2. 사업계획의 개요
 - “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(2010.1월)”에 따라 추진중인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5대 선도사업인 “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”의 일환으로서 새만금방조제 준공 및 도로개통('10.4) 후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방문객에게 편의 및 체류공간 제공을 위해 새만금 방조제의 중간에 위치한 신시도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전망중심 복합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임
3. 사업대상의 위치와 면적
 - 위치 :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일원
 - 면적 : 55,500㎡
4. 사업기간 : 2011년~2015년
5. 사업비 : 784억원
6. 토지이용계획
 - 대상지내 용도구획을 관광·휴양시설용지, 공공시설용지, 녹지 등으로 계획하여 각 시설지의 상호연계성 등을 고려 기능적으로 배치
 - 토지이용의 효율성,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, 환경보전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
 - 관광·휴양시설용지 25,383㎡(46%), 공공시설용지 10,091㎡(18%), 녹지용지 20,026㎡(36%)
 - 현 지형과 시설배치를 고려하여 최적의 정지토공계획 수립
 - 지반고 : EL=25~145m, 정지계획고 : EL=25~130m
 - 사업지 주변 동선체계, 교통흐름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규정에 부합토록 계획
 - 진입도로(B=10m, L=92m), 단지내도로(B=8m, L=486m), 비상도로, (B=6m, L=399m)
 - 법정 주차면수와 주차발생 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 예측결과를 검토하여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